

In depth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18 March 2015

No. 2015-03

What's inside:

Background

Issue

Illustrative examples

Appendix A

Distinguishing a business from an asset or a group of assets (Pharmaceutical and life sciences industry)

Background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및 생명과학 회사는 종종 취득, 투자 또는 라이선스 거래의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인지 또는 자산 취득인지를 결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분은 사업결합의 회계처리가 자산 취득의 회계처리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 IFRS에서 주요하게 차이나는 항목은 영업권의 인식, 이연법인세와 조건부 대가이다. 자산 취득과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대한 주요 차이 요약은 Appendix A에 기재되어 있다.

외관상 단일 자산의 이전으로 보이는 약정도 회계상 사업의 정의를 만족하는 다른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등을 취득하거나 라이선스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초기단계의 프로젝트나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투입물과 과정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선스의 취득을 포함한 많은 거래는 사업결합 지침에 따르면 사업이 될 수 있다. 사업을 취득하였는지 결정할 때 사업결합지침에 제공된 사업의 정의를 고려하는 것이 유용하다.

“사업은 투자자 또는 그 밖의 소유주, 조합원 또는 참여자에게 배당, 원가감소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형태로 수익을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관리될 수 있는 활동과 자산의 통제된 집합체이다. 사업은 투입물 그리고 그러한 투입물에 적용되어 산출물을 창출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사업은 보통 산출물을 갖지만, 산출물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통합된 집합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또한, 사업은 투입물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만약 시장참여자가 그 사업을 취득할 능력이 있고, 예를 들어 자신의 투입물과 과정에 그 사업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은 매도자가 당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투입물과 과정 둘 모두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이 정의는 기업, 자산, 자산 집단,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 취득이 사업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사업은 산출물이 아닌 투입물과 과정만 필요하다.



SAMIL | 삼일회계법인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투입물의 예는 지적 재산, 필요한 재료나 권리에 접근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 및 종업원을 포함한다. 과정의 예는 투입물에 적용될 때 산출물을 창출할 능력을 가진 시스템 또는 표준을 포함한다. 이는 전략적 경영과정, 운영과정 및 자원관리과정을 포함하며, 취득 후에 계속 고용되어야 하는 종업원을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기업, 자산, 자산 집단, 또는 지적 재산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회사는 시장참여자를 통해 부족한 요소를 (즉, 자신의 투입물과 과정에 그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용한 모든 투입물이나 과정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부족한 요소를 취득하기가 쉬울 수록 그 자산집단이나 활동은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Issue

기업이나, 자산, 자산 집단이나 라이선스 취득을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투입물, 과정, 산출물을 포함하여 취득한 집단의 모든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한 집단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취득한 집단이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취득한 집단에 없는 요소가 산출물을 생산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사업에서 취득하지 않은 모든 요소를 확인하면서 그러한 요소가 시장참여자에 대체되거나 복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관련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개발단계:** 취득한 자산이 어떤 개발단계에 있는가? 개발단계가 초기일수록 (예를 들면, 그 자체로는 산출물을 생산할 수 없는 전임상단계의 화합물) 실질적인 형태의 수익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투입물이나 유효한 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 지적 재산은 개발단계가 높아질수록 실질적인 투입물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 단계의 지적 재산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도 사업이 될 수도 있다.
- **개발된 기술:** 개발된 기술을 취득하였다면 개발된 기술이 제조, 홍보, 유통을 포함하여 매도자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고려해야 한다. 다른 투입물과 과정 또한 취득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매입자는 어떻게 투입물과 과정에 접근(예를 들면,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도자나 다른 당사자를 고용)하는가? 많은 경우 매입자는 개발된 기술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종종 재고자산, 고객리스트 등과 같은 투입물을 취득하기도 한다. 만약, 개발된 기술이 이러한 추가적인 투입물 또는 과정과 함께 취득되었다면, 취득한 집합체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 **고객:** 만약 취득한 집단에 고객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투입물이 다른 취득된 투입물 또는 과정과 결합하여 산출물을 생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지적 재산과 고객리스트를 취득하였다면, 비록 영업부서 인력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적 재산과 관련된 산출물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투입물(지적 재산과 고객리스트)과 과정(제조하고 배분할 능력과 권리)을 가지고 있다면, 취득한 집단은 산출물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취득한 집단에 고객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산출물을 해당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확립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객관계와 함께 취득된 과정과 투입물은 사업의 취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종업원:** 취득자가 매도자의 이전 종업원을 고용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종업원의 기능과 기술적 수준 및 종업원이 무엇을 할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취득한 집단이 사업을 구성하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준다. 예를 들어, 회계, 청구, 급여와 같은 관리 및 사무직 과정은 일반적으로 산출물을 창출하는 데 사용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되는 과정이 아니다. 반면, 화합물의 향후 개발에 결정적인 종업원(예를 들면 기술적 전문가나 감독당국과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종업원 또는 취득한 자산의 판매에 결정적인 고객이나 공급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종업원)을 보유하는 것은 사업을 취득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비록 취득자가 매도자의 이전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어떤 경우에는 취득자가 매도자 또는 다른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화합물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결정적인 용역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용역은 투입물이나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취득이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 **제조 시설:** 만약 취득자가 제조 시설을 취득하였고, 그 제조 시설은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FDA** 승인 받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제조과정을 사용하여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시설의 구입은 사업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약 제조 시설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위험이 높다면, 이 제조 시설은 취득일 현재 산출물을 아직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 결정에는 유의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 **계약상 약정과 주요 과정의 아웃소싱:** 약정의 일부분으로 계약이 인수되거나 체결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계약은 취득자(그리고 다른 시장 참여자)가 명백하게 투입물과 과정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취득된 지적 재산과 결합하였을 때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아웃소싱 약정은 공급 또는 제조 계약(취득자가 제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연구 개발 계약, 유형자산 리스에 대한 계약을 포함하며, 이는 지적 재산과 결합할 때 사업이 될 수 있다.
- **재고자산:** 취득한 집단에 **FDA** 승인 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고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취득된 집단은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입물과 과정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사업의 취득일 가능성이 높다.
- **자산의 취득 또는 지분의 취득:** 법적 실체만 있고 사업이 없는 기업(**shell company**)과 달리 영업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면 취득자는 그 사업을 계속할 기회를 가진다. 비록 취득자가 다르게 운영할 계획이 있더라도 시장 참여자가 그 회사가 운영된 대로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면, 사업의 정의를 만족할 것이다. 별도의 법적 실체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그러한 영업의 순자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도 사업이다.
- **사업이 없는 기업(**shell company**)의 취득:** 특정 화합물에 대한 권리만 보유하고 그 밖의 자산은 없는 기업의 취득은 자산의 취득일 것이다. 이러한 판단 전에 기업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이전대가:** 취득한 집단에 영업권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사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기는 취득한 집단이 사업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록이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위의 요소 중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것도 아니다. **IFRS**와 **US GAAP**의 사업결합 기준서는 사업을 정의할 때 서로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위에 제시된 목록과 이후의 사례는 **IFRS**와 **US GAAP** 하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거래가 사업결합인지 자산취득인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IFRS**와 **US GAAP**의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대한 출판물인 “*A Global Guide to Accounting for Business Combinations and Noncontrolling Interests*”를 참고하라.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Illustrative examples

다음은 제약업 및 생명과학 산업과 관련된 세 가지의 다른 상황에 대한 실무사례이다.

Example 1 — Acquisition of medical device that has been approved for marketing

Facts: D사는 최근에 의료기기에 대한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D사는 아직 그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를 시작하지 않았으나, 그 의료기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D사는 의료기기의 승인에 중점을 두어 연구개발과 감독당국의 승인 및 영업 관련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의료기기 회사인 M사는 D사로부터 위 의료기기와 관련된 지적 재산을 취득하였고, 제 3자와 제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M사는 영업 및 관리팀을 회사내에 보유하고 있으므로, D사의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Analysis: 위의 상황에 근거하면 M사는 사업을 취득한 것일 것이다. 이는 승인된 의료기기에 대한 지적 재산 권리의 형태의 투입물을 취득하였기 때문이다. 승인된 의료기기에 대한 권리는 내재적으로 의료기기의 디자인을 복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M사는 제조시설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제3자와 제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과정이 존재한다. 비록 M사는 D사의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았지만, M사와 의료기기 산업의 시장참여자는 그 의료기기에 대한 권리 를 취득하면서 산출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규제 관련, 영업 및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화된 노동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Example 2 — In-licens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Phase III clinical trials

Facts: D사는 일부 제약 후보물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D사의 유일한 활동은 후보물질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다. D사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뿐만 아니라 경영 및 관리직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제약회사인 B사는 D사로부터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후보물질에 대한 지적 재산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다. 라이선스와는 별도로 그 후보물질에 대한 개발 및 제조 권리도 부여 받았다. 비록 B사가 그 후보물질의 연구개발을 하는 인력을 고용하지는 않았지만, D사와 추가 계약을 체결하여 D사가 그 후보물질에 대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할 것이다.

Analysis: 위의 상황에 근거하면 B사는 지적 재산의 라이선스를 취득함으로써 사업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라이선스의 취득은 B사에게 임상 3상에 있는 지적 재산(투입물)의 개발, 제조 권리, 관련 문서화된 과정 및 지금까지 개발을 수행했던 인력(즉 연구개발인력에 의해서 확립된 운영 프로토콜과 과정)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B사는 사업의 필수 요소(즉 투입물과 과정)에 대한 통제를 보유한다. 비록 B사가 종업원을 고용하지는 않았지만, B사는 D사와의 연구개발 계약을 통하여 후보물질에 대한 결정적인 지식을 보유한 종업원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더욱이 B사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자산이나 장비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자산이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B사는 제조설비나 영업 관련 판매조직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시장참여자가 이러한 아이템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쉽게 복제할 수 있는

대형 제약회사일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라이선스 취득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투입 물과 과정은 후보물질을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산출물 생산 가능성이 높다.

Example 3 – In-licens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pre-clinical stage

Facts: B사가 D사로부터 구입한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가 현재 전임상단계에 있는 후보물질에 대한 지적 재산 권리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Example 2에 있는 모든 상황과 동일하다. 취득일 현재 후보물질에 대한 전략적인 경영, 운영 또는 자원관리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B사는 D사와 연구개발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D사의 연구개발인력이나 기타 다른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았다.

Analysis: 위의 상황에 근거하면, B사는 사업을 취득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는 B사가 전임상단계의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를 통하여 투입물에 접근할 권리만 취득하였고, D사의 연구인력을 고용하거나 이러한 연구인력을 활용할 수 없다. 지적 재산이 매우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는 B사는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과정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초기 단계의 이러한 투입물은 연구인력의 유의적인 노력으로 필요한 과정을 개발해야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Note – Example 2와 Example 3의 분석과 결론은 만약 B사가 라이선스가 아닌 지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Other Useful Publications

Stay Informed 2013 – 3

IFRS Manual of Accounting chapter 25

Global Guide to Accounting for Business Combinations and Noncontrolling Interest

Appendix A

다음 표는 IFRS 하에서 사업결합과 자산취득에 대한 회계처리의 차이에 대한 요약표이다.

차이	사업결합	자산취득
영업권을 포함한 무형자산 (예: IPR&D)	무형자산이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영업권은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고 무형자산은 인식한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이상으로 지급한 대가는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재배분한다.
조건부 대가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만약 부채로 분류된다면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는 미래의 마일즈스톤과 로열티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가능성성이 높고 신뢰성있게 측정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취득한 우발부채	공정가치가 결정될 수 있다면, 취득일 및 측정기간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생가능성이 높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있게 측정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이연법인세	취득한 자산과 부채의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영업권을 감소시킨다.	최초 인식 예외가 적용되고 이연법인세가 인식되지 않는다.
거래원가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산 집단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전된 대가의 일부로 인식한다.

US GAAP에서의 사업결합과 자산취득의 차이와 비교에 대해서는 PwC의 **A Global guide to accounting for business combination and noncontrolling interests** 및 **Stay Informed 2013 –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